



사회와 인권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필요성

설 동 훈 전북대 교수, 사회학

지난 7월 3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법률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문제 많은 산업연수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업연수제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대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익히는 연수생으로 취급하여, 노동3권을 박탈하는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1991년부터 산업연수제를 근간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을 펼친 결과, 한국사회에서는 불법체류·인권침해·송출비리라는 3대 문제점이 만연하였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약 40만 명 중 80% 가량이 불법체류자로서, 한국은 이 분야에서 단연 세계 1위다.

둘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 일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 일하다가 다쳐 손가락이나 팔이 절단된 사람 또는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폭행·성폭행을 당하고도 공권력에 호소하지 못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인권침해에 관한 국제 통계가 없어서 다행이지, 그것이 있다면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다.

셋째, 송출비리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외국인노동자 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천만 원을 상회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하는 데 드는 실제 경비는 그보다 훨씬 적는데, 그토록 많은 돈을 지불하는 까닭은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대가로 그 돈을 갈취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 실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불법체류자가 더 증가하고, 고용비용이 상승하며, 노사분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제시하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해 왔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세계 각국 어디에서도 발생한 적이 없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이다.

이번 '산업연수제-고용허가제 병행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여야 합의는 기득권자의 이해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신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성공하였고, 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 업무를 자신의 관할 범위로 끌어오는 데 성공하였지만, 외국인노동자간 차별대우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같은 나라 출신으로 한국에서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누리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산업연수생으로서 그러한 권리가 박탈당하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병행 실시'도 현재보다는 사정이 훨씬 나아지게 사실이다. 또 두 제도가 병행 실시되면, 자연스럽게 산업연수제는 고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병행 실시'라는 편법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고용허가제 자체의 실패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더라도 또 다른 편법을 도입할 수는 없다.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 실시'야말로 '올바른 길'(正道)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